

|| 목 차 ||

▲ 공 고

- 제2023-1115호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... 1

공 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-1115호

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2009.02.26.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, 성북구고시 제2013-65호(2013.06.20.), 성북구고시 제2015-09호(2015.01.20.), 성북구고시 제2019-155호(2019.9.26.)로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2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: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70개월
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사업시행자 주소

가.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-1 일대(153,501㎡)

나. 사업시행자: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창원

(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97, 402호(장위동,우성빌딩) ☎ 909-3161)

다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1층 공동주택 31개동 2,840세대(임대 484세대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

4. 공람에 관한 사항

가. 공람기간: 2023. 08. 22. ~ 2023. 09. 04. (14일간)

나. 공람장소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02-2241-2833)

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909-3161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계도서

5. 공람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내(2023. 08. 22.~ 2023. 09. 04).

나. 제출방법 :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또는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의견서 제출

6. 기타사항

가. 공람서류는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, 관련기관(부서)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공 램 의 건 서

공람내용	장위재정비촉진지구(장위4재정비촉진구역)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안)		
공람기간	2023.08.22. ~ 2023.09.04.		
의 제 출 인	성 명		
	생년월일	(남·여)	휴대폰
	소유물건		

의 건 내 용

○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

수집·이용목적	장위재정비촉진지구(장위4재정비촉진구역)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안)에 대한 공람의견 접수
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	이름, 생년월일, 주소(소유물건), 연락처
보유·이용기간	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완료시까지
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	- 장위재정비촉진지구(장위4재정비촉진구역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의 공람의견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-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보유·이용 기간에만 보유·이용·보관됩니다. - 본인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

☐ 미동의

2023. . .

제 출 인 :

(서명 또는 인)

성북구청장 귀하

